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석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85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1일

발 의 자 : 전석기 의원(1명)

찬 성 자 : 이광성, 김경영, 김광수,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강대호, 강동길, 권순선,
김기대, 김상진, 김진수,
김창원, 김평남, 김호평,
김희걸, 노식래, 문장길,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재혁, 이경선,
이광호,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정진술, 채인목, 최선,
최웅식, 추승우,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의원(38명)

1.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30초간 손을 씻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2019년 9월 조사결과 올바른 손 씻기를 지키는 시민은 2%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염병으로 인한 손 씻기에 사용되는 수도물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올바른 손 씻기를 적극 실천하도록 하여 시민의 감염병 예방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2020년 3월 31일 현재 148개국에서 확진자 770,138명, 사망자 36,796명이 발생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 세계적대유행(팬데믹)을 선포하였음.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국가적 감염병 예방을 위해 30초간 손 씻기와 마스크 사용이 가장 중요하다(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보건복지부 2019.2.)는 점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및 일부 공공시설 이용자를 위한 마스크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으나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는 단순 홍보에 그쳐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실효성 있는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손 씻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수도사용량을 서울시가 감면 방식으로 책임지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추가요금의 부담 없이 30초간 올바르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전파를 최소화 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는 세대 당 1개월간 약1톤 정도의 물을 추가로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정용 수도에 대한 감면 대상과 감면 정도는 감염병의 위험성에 따라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함.

근래에 발생한 세계적인 감염병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09년 신종플루(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9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대략 5년 간격으로 발생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감염병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정용 수도 사용료를 서울시가 지원 감면할 수 있게 함. (안 제31조제1항제11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감염병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정용 수도사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u><신설></u></p> <p>11. (생략)</p> <p>② (생략)</p>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감염병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정용 수도사용.</p> <p>12. (현행 제11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1조 제1항 제11호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감염병 경계 단계 이상을 발령한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정용 수도 사용(단, 감면요금은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이 발생하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 제1항제2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제1항), 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음.

- 조례개정안 제31조에 제1항 제11호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중에서 감염병 ‘경계’ 단계 이상의 재난발생은 그 발생 시기나 빈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발생하더라도 경계단계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

[가정용 수전 및 사용 현황]

구 분	수 전 수	징수 결정량	징수 결정액
	수전수(桵)	양(천 m^3)	금 액 (백만원)
가 정 용	1,910,045	708,379	285,373

※ 상수도사업본부 자료(2019.12월말 기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공도연

☎ 02-2180-7933

e-mail : ehdus0@seoul.go.kr